

행정명령

**주 기관 및 관할기관을 대상으로 한  
뉴욕주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지시**

**이에 따라,** 뉴욕은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에 대한 상호 호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타 환경 오염 배출 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고 건물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은 뉴욕주의 환경, 경제, 보건의 장기적인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과 천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명령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I. 정의**

본 행정 명령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A. “해당 뉴욕주 기관”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과 뉴저지 항만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 의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사, 공공당국과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 “평균 소스 에너지 사용도” 또는 “평균 EUI”는 모든 주 소유나 관리 빌딩에 대하여 평방피트당 평균 소스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C. “소스에너지”는 발전, 송전과 배전 과정의 전력 손실을 포함하여 현장에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소모되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II. 에너지 절감 목표**

2020년 4월 1일까지 모든 해당 뉴욕주 기관은 주 회계연도가 2010/2011(“목표”)의 평균 EUI를 기준으로 주 소유나 관리빌딩의 평균 EUI가 전체적으로 20% 이상 절감되어야 합니다.

### III.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사항

A. 중앙 관리와 실행팀: 뉴욕 전력 공사("NYPA")는 본 행정명령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관리와 실행팀("CMIT")을 설립해야 합니다.

(1) CMIT는 다음과 같이 지시를 받고 권한을 가집니다.

- (a) 목표가 달성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b) 직접 적용되는 해당 뉴욕주 기관은 본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c) 본 행정명령의 발효 이후 9개월 이내에 해당 뉴욕주 기관이 행정명령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지침")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d) 본 행정명령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뉴욕주 기관은 개별적으로 전략적이고 기술적이며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e) 본 행정명령의 발효 이후 12개월 이내에 향후 7년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f) 해당 뉴욕주 기관이 각각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한 보고 요건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 (g) 주 빌딩 포트폴리오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영과 유지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통한 절감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 (h) 201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월 15일에 ASE가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의 요건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여기에 Office of General Services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공사는 본 행정명령에 따라 CMIT가 제정한 규정의 요건을 실행하고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CMIT와 개별적인 해당 뉴욕주 기관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B. 해당 뉴욕주 기관

위에서 제정된 요건 이외에도 각각의 해당 뉴욕주 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벤치마킹. 각각의 주 회계연도마다 각각의 해당 뉴욕주 기관은 2만 평방 피트를 초과하는 면적을 가진 주소유 및 관리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마스터 미터 캠퍼스의 빌딩은 건물 차원에서 벤치마킹되는 시점 이후에는 건물 차원에서 서브미터로 측정될 때까지 캠퍼스 레벨에서 벤치마킹되어야 합니다.

(2) 감사. 지침에서 정의한대로 낮은 벤치마크 점수를 받은 빌딩은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Level II 에너지 감사 또는 CMIT가 승인하는 다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침에서 정의하거나 별도로 해당 뉴욕주 기관이나 CMIT가 우선화한 대로 평균 이상의 EUI 또는 낮은 벤치마크 점수를 얻은 캠퍼스는 캠퍼스 전체의 ASHRAE Level II 에너지 감사 또는 CMIT가 승인한 다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측정 이외에도 현장에서 비용 효율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난방 및 전력을 통합한 고효율성의 기회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3) 필수 자본 프로젝트와 에너지 최적화 수단. 해당 뉴욕주 기관은 감사에서 파악되고 추천된 방법으로 비용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실행해야 하며 감사가 종료된지 2년 이내에 이러한 방법의 실행이 상당히 진척되거나 완수되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료 및 저비용 운영의 개선, 레트로 커미셔닝, 자본적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장, 현장의 재생 가능 및 열효율성을 통합한 난방 및 전력, CMIT가 파악한 기타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서브 미터링. 해당 뉴욕주 기관은 서브 미터링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스터 미터링된 캠퍼스의 10만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큰 빌딩의 모든 관련 에너지 소스에 대한 서브 미터링을 우선화하기 위하여 CMIT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마스터 미터링된 캠퍼스의 10만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모든 빌딩은 빌딩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당 뉴욕주 기관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음을 CMIT에게 증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개별 빌딩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연료와 다른 에너지 소스에 대하여 서브 미터링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자본 계획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 분석의 통합. 자본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서 모든 해당 뉴욕주 기관은 모든 자본적 프로젝트 계획의 설계 단계에 에너지 효율성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적 프로젝트는 지침에서 정의한 대로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 또는 기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6) 크레딧. 해당 뉴욕주 기관은 임대 공간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목표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성과 같은 호스트 사이트가 행정명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전개해왔다면 현장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성을 설치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뉴욕주 기관은 이러한 크레딧과 관련하여 CMIT와 상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7) 보고. 매년 10월 1일 이전에 각각의 해당 뉴욕주 기관은 2만 평방 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진 모든 주 소유나 관리 빌딩에 대하여 CMIT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와 본 행정명령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모든 다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면제

자동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사용은 본 행정명령의 목표와 요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CMIT는 ENERGY STAR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거나 특정 연도에 비교 빌딩 중 상위 25%에 속하는 빌딩에 부여되는 벤치마크 점수를 획득한 빌딩과 같은 예외를 포함하여 지침에서 제정된 기준과 과정에 따라 보여준 정당한 목적을 위한 다른 면제요건을 제공할 권한을 가집니다. 해당 뉴욕주 기관은 CMIT에 연례 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 요청과 CMIT의 결정내용이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IV. 이전 행정 명령의 폐지

2001년 6월 10일에 발행된 행정명령 111호는 여기에 표기된 날짜 기준으로 취소되며 본 행정명령으로 대체됩니다.

2012년 12월 28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